

#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62
----------	------

제출연월일: 2025. 8. 2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 2025. 12. 31.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니어클럽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승인 및 동의)

다. 위탁의 필요성

-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 내용

- 시니어클럽 운영 및 시설의 관리 전반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및 우수사례 발굴
- 그 밖에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마. 위탁기간: 2026. 1. 1.~2030. 12. 31.(5년)

바. 수탁자격: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 소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아. 연간 소요예산: 415백만원 정도(인건비 354, 운영비 51, 사업비 10)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자격 갖춘 직원 및 수행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 사업 운영 경험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 시 효율 증대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민간위탁 시 수행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 ○ 또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참여자 관리,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개발에 대한 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p>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 및 위탁·수탁 협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li> </ul>
<p>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며,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서비스 제공이 요구</li> </ul>

☞ **종합의견:** 시니어클럽 운영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3.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5. 9.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2025. 10.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12.

### 4. 참고사항

- 【붙임1】 근거법규
- 【붙임2】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붙임 1    관련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 붙임 2 시니어클럽 현황

### □ 시니어클럽운영 개요

- 시설명: 중구시니어클럽
- 위치: 태화로 19, 2층(하반기 이전 예정)
- 시설규모: 136㎡ / 임대(계약기간: 2023. 1. 1.~2025. 12. 31.)
-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이사장: 손경숙) ※ 관장: 서정숙
- 위탁기간: 2021. 1. 1.~2025. 12. 31.(5년)
  - 기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에 따라 위탁 체결 필요
- 직원 수: 5명(관장 1, 실장 1, 과장 1, 팀장 2) ※ 전담인력(기간제) 20명
- 지원예산

(단위:천원)

연도	지원예산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종사자수당	
2025	361,200	342,320	10,000	8,880	시구 210,949 150,251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시설명	연도(년)	사업단수(개)	참여인원(명)	사업비(백만원)	사업유형
중구 시니어 클럽	2025	37	2,201	1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li> <li>• 역량활용</li> <li>• 공동체사업단</li> <li>• 취업지원</li> </ul>

- 주요성과
  -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최우수상 수상
  -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복수유형 우수상 수상 및 인센티브(15,000천원)
  -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복수유형 우수상 수상 및 인센티브(15,000천원)